

서울특별시 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932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23년 6월 20일

제안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재난 예보·경보 전파에 활용되는 현행 제5조제3항에 따른 매체는 그 종류와 특성이 다양하고 긴급재난문자의 경우 각각의 휴대전화 등록 없이 재난문자 대상지역 전체 시민에게 일괄 전송되는 방식이어서 개별 맞춤형 발송이 불가능한 구조일 뿐만 아니라 글자수가 90자로 제한되기 때문에
- 개정안과 같이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바 현실성을 고려하여 강행규정을 노력의무로 순화함으로써 매체 특성 및 시스템 한계 등을 고려한 탄력적 적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.

2. 주요골자

- 가. 현실성을 반영하여 강행규정을 노력의무로 순화함(안 제5조제4항).

서울특별시 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4항 중 “포함하여야 한다”를 “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(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 구축) ① ~ ③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	<p>제5조(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 구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제3항에 따른 재난 예보·경보 전파 시 다음 각 호의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포함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<u>재난 예보·경보 발령 사유</u></p> <p>2. <u>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</u></p> <p>3. <u>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, 대피소 위치 등</u></p> <p>4. <u>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</u></p> <p>⑤·⑥ (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)</p>	<p>제5조(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 구축) ① ~ 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1. ----- --</p> <p>2. ----- -</p> <p>3. ----- ----- -</p> <p>4. ----- --</p> <p>⑤·⑥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④·⑤ (생략)</p>		

서울특별시 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재난 예보·경보 전파 시 다음 각 호의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재난 예보·경보 발령 사유
2.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
3.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, 대피소 위치 등
4.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